

# 폐기물부담금 제도 주요 안내

## (수입업체용)



### 폐기물부담금제도 란?

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,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·재료·용기의 제조업자(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·재료·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)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

[관련법령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(폐기물부담금)]

### 26년도 정기신고

신고 기간: 26. 3. 31. 까지

신고 실적: 25년도 수입분(25. 1. 1 ~ 25. 12. 31)

제출 방법: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온라인 신고

[portal.budamgum.or.kr](http://portal.budamgum.or.kr) | Q

자세한 내용은



### 신고대상 및 요율

일반 제품	일반 제품	요율
살충제, 유독물 용기		24.9 ~ 84.3원 / 개
부동액		189.8원 / L
담배(전자담배 포함)		24.4원 / 20개비
1회용 기저귀		5.5원 / 개
아이스팩(고흡수성수지)		313원 / kg
플라스틱 제품	플라스틱 제품	요율
건축용		75원 / kg
일반용		150원 / kg

\* 플라스틱 제품이란, **플라스틱을 재료\*로 사용한 제품**으로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·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
\* 천연가스,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

### 폐기물부담금 산정

✓ 일반제품: 수입실적량 × 부과요율 × 부담금 산정지수

✓ 플라스틱제품: (수입실적량의 플라스틱 투입량(kg) - 감면량) × 부과요율 × 부담금 산정지수

\* 25년실적 부담금 산정지수: 1.3914(담배: 1.1950, 아이스팩: 1.1265),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변동

### 폐기물부담금 용도

폐기물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·비축,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,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,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

[관련법령: 자원재활용법 제20조(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)]

### Q&A

1. 폐기물부담금 납부는 사용자가 시스템으로 실적 제출 후, 공단 담당자가 검토 및 승인 후 지로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.
2. 실적 승인/반려 등 고나련 안내는 시스템 실적 제출자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.
3. 실적 제출에 관한 공단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해당 법령에 의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- 4.회원이입은 업체별 인원 제한이 없고, 사용자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.
5. 실적 검토 및 승인(보완으로 인한 반려)는 연중 실시되며, 실적제출 순서 및 예상부담금액 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진행됩니다.

문의 |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
폐기물부담금(대표번호) 02-3153-0540



기후에너지환경부



한국환경공단

#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EZ(이지) 매뉴얼

## (수입업체용)



폐기물부담금제도 portal.budamgum.or.kr | 🔍

접속 ▶ 통합회원 회원가입 ▶ 폐기물부담금제도 체크 ▶ 공단 승인 ▶ 회원로그인 후 인증서 등록 ▶ (인증서로그인) 접속

###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

#### 플라스틱 제품

플라스틱을 재료\*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·소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

\* 천연가스,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

#### 일반 제품

살충제, 유독물 용기 (단위: 개)

부동액 (단위: L)

담배 (단위: 1갑\_20개비)

1회용 기저귀 (단위: 개)

아이스팩(고흡수성수지) (단위: kg)

###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온라인 신고방법

#### 플라스틱 물품

##### 1단계 정보 조회

수입실적신고 ▶ 신규작성 ▶ 수입년도 선택 ▶ 일반신고

##### 2단계 신고필증 확인

물품종류(일반용, 건축용) 선택  
[방법1]

순중량여부(적용)선택 ▶ 임시저장 ▶ 다음 ▶ 5단계로 바로 이동(3,4단계 생략)

\* 순중량 적용 선택 시, 신고필증의 순중량으로 합산하여 부담금 산정하므로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

[방법2]

순중량여부(미적용)선택 ▶ 임시저장 ▶ 다음

##### 3단계 수량정보 등록

실제수입수량 및 비대상수량 입력 ▶ 파일추가(증빙자료첨부) ▶ 임시저장 ▶ 다음

##### 4단계 중량정보 등록

플라스틱 수입수량 단위당 무게(g) 입력 [신재원료사용량] ▶ 파일추가(증빙자료첨부) ▶ 임시저장 ▶ 다음

##### 5단계 예상부담금 안내

대표품목검색 ▶ 총부담금액확인 ▶ 제출하기 (SMS본인인증 진행) ▶ 신고완료

#### 일반 물품

##### 1단계 정보 조회

수입실적신고 ▶ 신규작성 ▶ 수입년도 선택 ▶ 일반신고

##### 2단계 신고필증 확인

일반물품 탭 선택 ▶ 물품종류(부동액, 담배, 1회용 기저귀 등) 선택 ▶ 임시저장 ▶ 다음

##### 3단계 수량정보 등록

실제수입수량 및 비대상수량 입력 ▶ 파일추가(증빙자료첨부) ▶ 임시저장 ▶ 다음

\* 실제수량 입력 시 필요한 경우, 신고단위로 환산하여 입력 (예시) 수입단위(팩): 1회용기저귀 1팩(20개입) → 신고단위(개): 20개(기저귀 신고단위)

##### 4단계 중량정보 등록

(생략)

##### 5단계 예상부담금 안내

대표품목검색 ▶ 총부담금액확인 ▶ 제출하기 (SMS본인인증 진행) ▶ 신고완료

문의 |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
폐기물부담금(대표번호) 02-3153-0540



기후에너지환경부



한국환경공단

# ! [참고] 폐기물부담금 제도 증빙자료 안내



##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증빙자료

대상품목	확인항목	증빙자료
플라스틱 제품	순중량 신고 제품이 <b>100% 플라스틱 재질</b> 인 경우, 수입신고필증의 순중량 적용	필요 없음
	함유량 신고 제품의 <b>일부만 플라스틱</b> 인 경우, 직접 입력한 중량으로 적용 (개당 중량을 g단위로 입력)	<제품의 재질 및 무게 증빙자료> (택 1) 1. 재질증명서(Bill of material, BOM) :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 2. 저울사진: 직접 분해 후, 저울에 올려 찍은 사진 3. 시험성적서: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문서
	비대상 신고 제품에 <b>플라스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</b> 경우 (천연가죽, 목재, 금속, 섬유 등)	
살충제 / 유독물 용기	수입수량용량(500ml 초과 / 이하) 및 재질(플라스틱, 유리병, 금속캔)  살충제·유독물이 아닐 경우	Packing List, 제품 사진(용량, 재질) 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등
부동액	용량(리터) 및 수입수량	제품 사진(용량), Packing List 또는 invoice 등
1회용 기저귀	날개 수량 확인 필요	제품 사진(박스, 팩), Packing List
담배	수입수량, 1갑(20개비) 환산 필요	Packing List 또는 invoice 등

## 폐기물부담금 비대상품목 증빙자료

부과면제 사유	증빙자료
<p>플라스틱 제품에 한함</p> <p>최종제품의 원·부재료로 사용 (해당 최종제품 제조자가 부과대상)</p> <p>자사 직접 제조</p> <p>타사(제조업체) 납품</p> <p>재질 비대상 (천연가죽, 목재, 금속, 섬유원단 등)</p>	<p>①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 * 원·부재료를 수입하여 최종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임</p> <p>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(연도별) ② 대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각1매 또는 거래처현황(사업자번호 / 업태 / 종목 / 소재지 / 연락처) * 공급받는자 업태: 제조업 확인 ③ 공급제품 활용 용도 설명자료</p> <p>제품사진, 카탈로그, 재질 확인 가능한 성분표 등</p>
<p>타제도 대상제품 (재활용의무대상(EPR) 및 환경성보장제(EcoAS))</p> <p>연구용</p> <p>생분해성 수지제품</p> <p>의료기기</p>	<p>① 재활용의무대상(EPR) 또는 환경성보장제(EcoAs) 이행실적 (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사본)</p> <p>'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'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정관</p> <p>한국환경산업기술원 - "환경표지 인증서" 생분해성 수지 제품(EL724)</p> <p>'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(환경부 고시 제2023-124호, 2023. 6. 1.)'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수입 인증서(허가증 등)에 분류번호(등급) 확인가능 자료</p>
수출	<p>① 수출신고필증(비고란에 수입신고번호와 수출량이 기재된 건에 한함) ②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서 ③ 관세환급신청서(갑, 병지)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, 영세율세금계산서</p> <p>① 영세율 세금계산서 또는 내국 신용장 ② 관세양도관련서류 (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, 수입세액분할증명서)</p>

문의 |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
폐기물부담금(대표번호) 02-3153-0540